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540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김경우, 경만선, 권수정,
권영희, 김기덕, 김인호,
김정환, 김제리, 박순규,
신정호, 유 용, 이동현,
이병도, 이성배, 이승미,
이정인, 이준형, 이호대,
임종국, 전병주, 최기찬,
추승우, 홍성룡 의원(23명)

1. 주 문

- 기초생활수급 저소득 청년에게 더 많은 공공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과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간 중복수혜가 불가능함에 따라, 오히려 저소득 청년이 취업지원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음.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의 소득산정 제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구직 활동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제안이유

- 생계급여자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청년수당(월50만원, 최대 6개월간)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액 외 추가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생계급여자는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교육·주거·의료급여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수당 지급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동일한 문제점이 있음.
- 정부는 복지의 보충성의 원리 등에 따라 생계급여와 청년수당 등을 유사사업의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수혜를 막아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킴.
- 실제로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넘는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50%이내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55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청년수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월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인 기초생계수급 청년은 청년수당 대상이 될 수 없음.
(2020년 기초생활수급 4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월 소득 인정액은 각각 142만4752원, 189만9670원, 213만7128원, 237만4587원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초생활수급 저소득 청년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돕고 형평성에 맞는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에게 서울 청년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4. 이송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여, 취업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미취업 청년층에게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 역량을 키워 사회에 진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정작 가장 빈곤한 저소득 청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에 대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 생계급여자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서울시 청년수당(월50만원, 최대 6개월간)을 지급받을 경우 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므로 기초생활수급액 외 추가적으로 청년수당 지급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34세 인구 중 졸업 후 2년이 넘는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50%이내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55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청년수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월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인 기초생계수급 청년은 청년수당 대상이 될 수 없어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킴.
(2020년 기초생활수급 4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월 소득 인정액은 각각 142만4752원, 189만9670원, 213만7128원, 237만4587원임)

- 또한 서울 청년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6년(3천명)부터 2020년(3만명)까지 그 지원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시행령의 개정 필요 등의 사유로 중복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청년(서울시 2만2천명_2018년 기준)은 아예 청년수당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임.
- ‘가난하면 더 못 받는’ 청년수당의 역차별과 불합리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고, 더 어려운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빈곤한 삶을 개혁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의 소득산정 제외 금액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개정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2020.5.2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일동